

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꾸는 의회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10.)

#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 봉 기]



# 목 차

1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1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	6
3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10
4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	17



#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 2.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활동 적극 시행 사업체에 우수업체 인증
  -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포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지원 등
-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을 정함(안 제6조)
-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7조~제12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00천원 확보 예정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8. 17. ~ 9. 6.
  - 예고결과: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같은 법 제4의 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 제3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군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 비용추계서 상에 컨설팅 예산만 편성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 2. 제안이유

-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희)
- 사업비 : 4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3년	300	400	400			40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 4. 참고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경남 신용보증 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출연금은 군 관내 소재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지난해 기준 98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 등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으로 보임
- 경남신용보증 재단에서는 2023년도 출연금을 5억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4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대출 수요 변화, 타 시군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출연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 2. 제안이유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거창시장번영회에 재위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 나. 시설현황(거창전통시장 내)
  - 공영주차장 : 거창읍 중앙리 154(3,261.35㎡, 지상 2층)
  - 공중화장실(3개소) : 거창읍 중앙리 122-8외 2개소(133.35㎡)
- 다. 위탁대상 사무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라. 운영계획

- 위탁기관 : (사)거창시장변영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위탁내용

구 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비고
위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관리</li> <li>· 주차장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li> <li>· 주차장 시설 수리·수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화장실 청소</li> <li>· 화장실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li> <li>· 화장실 수리·수선</li> <li>· 화장지 비누 등 비품 비치</li> </ul>	
위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 위탁</li> <li>※ 운영 수입금 전액 주차장 및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지원 : 33,628천원</li> </ul>	

마. 소요예산 : 33,628천원(공중화장실 위탁비용지원)

※ 운영 수입 없이 유지·관리비만 발생

## 4. 참고사항

가. 위탁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제2항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제1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제1항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기관에 재계약 할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 (주)거창시장 번영회에 재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위탁의 경우 만료일 6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다소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위의 적법하지 않는 사항을 재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본 동의안의 경우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2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 240백만원(2022년 260백만원)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98백만원
    - 항공촬영 지적 분석용 프로그램 신규 구입 : 20백만원
    -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야(토질 및 콘크리트 등) 확대를 위한 장비 구입 : 22백만원

## 4. 참고사항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 같은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 경비 등에 사용되는 것임
- 그간 기업 샘플 제작, 석재 시험분석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학술 연구 용역 등 지역 화강석 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관내 34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위해 화강석 연구 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출연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22.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조○○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정○○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신○○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22. 3. 21. ~ '25. 3. 20.			
		강○○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고문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22. 3. 21. ~ '25. 3. 20.			
강○○		전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6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504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806	1,022	1,044		부채	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180	180	260		자본 <sup>1)</sup>	49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 12. 31. 기준 454			381		58	